

4. 도시저소득주민의주거환경개선을위한 임시조치법시행령중개정령

대통령령 제16,649 1999. 12. 28

개정이유 및 주요골자

도시저소득주민을 위한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지속적인 추진을 위하여 도시저소득주민의주거환경개선을위한임시조치법이 개정되어 동법의 유효기간이 5년 연장됨에 따라 이 영의 유효기간을 연장하려는 것임

도시저소득주민의 주거환경개선을위한임시조치법시행령중 "1999년 12월 31일"을 "2004년 12월 31일"로 한다.

치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대통령령 제12776호 도시저소득주민의주거환경개선을위한임시조치법시행령부칙 제1항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중 "1999년 12월 31일"을 "2004년 12월 31

부 칙

주택회보